

충청북도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동의

동의연월일 : 2012년 6월 일

동 의 자 : 박문희 의원

찬 성 자 : 김재종 의원

□ 주 문

- 「충청북도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의장에게 제안하고자 함.

□ 제안이유

- 「충청북도의회 위원회조례」중 제3조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소관 사항을 개정하여 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 의안전문 : 붙임

| | |
|--------------|-----------------------|
| 의안번호 | 제 호 |
| 의 결 연 월 일 | 2012년 6월 일 (제311회) |

충청북도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
| 동 의 자 | 박 문 희 의원 |
| 동의연월일 | 2012년 6월 일 |

충청북도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
| 의안 번호 | |
|----------|--|

동의연월일: 2012년 6월 일
동의자: 박문희 의원
찬성자: 김재종 의원

1. 제안이유

- 효율적인 상임위원회 구성과 운영을 위하여 「충청북도의회 위원회조례」의 위원회별 직무와 소관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소관 및 명칭을 개정(안 제3조제2항)
 - 여성정책관,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 ⇒ 정책복지위원회로 변경
 - 감사관, 충북문화재단(신설) ⇒ 행정문화위원회로 변경
 - 충북개발연구원 ⇒ 충북발전연구원으로 명칭 변경
 - 지방의료원 ⇒ 청주의료원, 충주의료원으로 명칭 변경

3. 개정조례안 : 별첨

4.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5. 참고사항

- 관계법령 : 별첨
- 예산조치 : 해당없음
- 규제관련사항 : 해당없음
- 입법예고 여부 : 해당없음

충청북도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의회 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상임위원회의 소관은 다음과 같다.

1. 의회운영위원회

가. 의회사무처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2. 정책복지위원회

가. 여성정책관, 기획관리실, 보건복지국, 충북도립대학,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충북발전연구원 운영에 관한 사항

다. 충북인재양성재단 운영에 관한 사항

라. 충북학사 운영에 관한 사항

마. 청주의료원, 충주의료원 운영에 관한 사항

바. 충북지식산업진흥원 운영에 관한 사항

3. 행정문화위원회

가. 공보관, 감사관, 행정국, 문화관광환경국, 자치연수원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운영에 관한 사항

다. 충북문화재단 운영에 관한 사항

4. 산업경제위원회

가. 경제통상국, 농정국, 농업기술원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충북테크노파크 운영에 관한 사항

다.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 라. 충북신용보증재단 운영에 관한 사항
- 5. 건설소방위원회
 - 가. 균형건설국, 바이오밸리추진단, 소방본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 나. 오송바이오진흥재단 운영에 관한 사항
 - 다. 충청북도교통연수원 운영에 관한 사항
 - 라. 충북개발공사 운영에 관한 사항
- 6. 교육위원회
 - 가. 교육청(교육·학예) 소관에 속하는 사항

부칙

이 조례는 2012년 7월 7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p>제3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p> <p>①(생략)</p> <p>② 상임위원회의 소관은 다음과 같다.</p> <p>1. 의회운영위원회</p> <p>가. 의회사무처 소관에 속하는 사항</p> <p>나. 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p> <p>2. 정책복지위원회</p> <p>가. 감사관실, 기획관리실, 보건복지국, 충북도립대학,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속하는 사항</p> <p>나. 삭제</p> <p>다. 충북개발연구원 운영에 관한 사항</p> <p>라. 충북인재양성재단 운영에 관한 사항</p> <p>마. 충북학사 운영에 관한 사항</p> <p>바. 지방의료원 운영에 관한 사항</p> <p>3. 행정문화위원회</p> <p>가. 공보관, 여성정책관, 행정국, 문화관광환경국, 자치연수원 소관에 속하는 사항</p> <p>나.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운영에 관한 사항</p> <p>4. 산업경제위원회</p> <p>가. 경제통상국, 농정국, 농업기술원 소관에 속하는 사항</p> | <p>제3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p> <p>①(현행과 같음)</p> <p>② 상임위원회의 소관은 다음과 같다.</p> <p>1. 의회운영위원회</p> <p>가. 의회사무처 소관에 속하는 사항</p> <p>나. 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p> <p>2. 정책복지위원회</p> <p>가. 여성정책관, 기획관리실, 보건복지국, 충북도립대학,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속하는 사항</p> <p>나. 충북발전연구원 운영에 관한 사항</p> <p>다. 충북인재양성재단 운영에 관한 사항</p> <p>라. 충북학사 운영에 관한 사항</p> <p>마. 청주의료원, 충주의료원 운영에 관한 사항</p> <p>바. 충북지식산업진흥원 운영에 관한 사항</p> <p>3. 행정문화위원회</p> <p>가. 감사관, 공보관, 행정국, 문화관광환경국, 자치연수원 소관에 속하는 사항</p> <p>나.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운영에 관한 사항</p> <p>다. 충북문화재단 운영에 관한 사항</p> <p>4. 산업경제위원회</p> <p>가. 경제통상국, 농정국, 농업기술원 소관에 속하는 사항</p> |

| 현행 | 개정안 |
|---|---|
| <p>나.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 운영에 관한 사항</p> <p>다. 충북테크노파크 운영에 관한 사항</p> <p>라.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p> <p>마. 충북신용보증재단 운영에 관한 사항</p> <p>5. 건설소방위원회</p> <p>가. 균형건설국, 바이오밸리추진단, 소방본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p> <p>나. 오송바이오진흥재단 운영에 관한 사항</p> <p>다. 충청북도교통연수원 운영에 관한 사항</p> <p>라. 충북개발공사 운영에 관한 사항</p> <p>6. 교육위원회</p> <p>가. 교육청(교육·학예) 소관에 속하는 사항</p> | <p>나. 충북테크노파크 운영에 관한 사항</p> <p>다.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p> <p>라. 충북신용보증재단 운영에 관한 사항</p> <p>5. 건설소방위원회</p> <p>가. 균형건설국, 바이오밸리추진단, 소방본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p> <p>나. 오송바이오진흥재단 운영에 관한 사항</p> <p>다. 충청북도교통연수원 운영에 관한 사항</p> <p>라. 충북개발공사 운영에 관한 사항</p> <p>6. 교육위원회</p> <p>가. 교육청(교육·학예) 소관에 속하는 사항</p> |

관계법령 발췌

□ 지방자치법

제56조(위원회의 설치) ① 지방의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종류는 소관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처리하는 상임위원회와 특정한 안건을 일시적으로 심사·처리하기 위한 특별위원회 두 가지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본회의에서 선임한다.

제62조(위원회에 관한 조례) 위원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